

2026

공인노무사, 7급 고용노동직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엠북 노동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신설, 개정 내용 반영
- ✦ 50분 완성

도서명 : 남녀고용평등법

ISBN : 979-11-7393-253-3

발간일 : 2026-05-21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6,500원



제3편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p14)

제3장 모성 보호(p35)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p40)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p65)

제5장 보칙(p79)

제6장 벌칙(p85~94)

[약어]

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부령은 고용노동부령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해고등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 예정

[법 개정]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로 변경(26년 9월 18일 시행)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모성 보호, 여성 고용 촉진
- 남녀고용평등 실현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2. 정의

가.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성별, 혼인, 가족내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

1)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해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포함

2) 다음은 제외

- 직무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
-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
- 법/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나. 직장 내 성희롱은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 다른 근로자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 주는 것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존하는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 우대

라. **근로자**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 의사 가진 자

3. **적용 범위**

가)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이하 사업)에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 법 전부 적용안함

나)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법 따름

4. 국가등의 책무

가) 법 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 지원,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방해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자원 조성, 여건 마련 노력

5. 근로자와 사업주의 책무

가.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 노력

나. 사업주는

1)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방해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근로환경 조성 노력

2)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 관행/제도 개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근무환경 조성 노력

6. 장관의 정책의 수립 등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다음 정책 수립/시행 요

-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위한 홍보
-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포함) 선정, 행정/재정적 지원
-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설정/추진
- 4) 남녀차별 개선, 여성취업 확대 조사/연구
- 5)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개선, 행정/재정적 지원
- 6) 남녀고용평등 실현,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

나.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자 의견 반영 노력 요

다.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장에
협조 요청 가능

7. 기본계획

가. 장관은

- 1)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요
- 2)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장에 자료 요청
가능
- 3) 기본계획 수립시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

나. 내용

- 1) 여성취업 촉진
-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대우
-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정착
- 4) 여성 직업능력 개발
- 5)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
- 6) 일/가정 양립 지원
-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운영
- 8) 직전 기본계획 평가
- 9) 장관 인정 사항

8. 실태조사 실시

- 장관은 사업,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을 위해
정기적 조사 요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7~17조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대우

1. 근로자 모집과 채용

: 사업주는

가) 남녀 차별 못함

나) 직무 수행에 필요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미혼 조건 등 제시/요구 못함

2. 임금

가) 사업주는 동일 사업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지급 요

나) 동일 가치 노동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

- 사업주가 기준 정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위원 의견 들어야 함

다) 사업주가 임금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봄

3. 사업주는 임금 외 근로자 생활 보조 금품

지급, 자금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 차별 못함